

[사 건 명] 행심 2017 - 80

『출석정지 5일 징계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□□□

□ 피청구인 : ○○중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7. 11. 20. 청구인에 대하여 한
『출석정지 5일 징계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1. 사건 개요

가. 청구인 □□□(이하 ‘청구인’ 이라고 한다)은 ○○중학교의 학생
으로 2017. 11. 13. 월요일 4교시 스포츠클럽 시간에 다른 동급생
●●●가 4층 후관 소강당에서 엎어져 있는 틈을 타 위로 몸을
포개어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(이하 ‘이 사건 행
위’ 라고 한다)를 하였다.

나. 담당교사인 ■■■(女) 교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를 목격하고
청구인에게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한
채 “예” 라고 대답을 할 뿐 몸을 밀착한 상태로 유지하였다. 이
에 담당교사 ■■■ 교사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를 재차 제지
하고 나서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를 멈추었다.

다. 담당교사인 ㉸㉸㉸ 교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이유를 묻자, 청구인은 “청소년인데 어쩌냐, ㉸㉸㉸ 학생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랬다” 라고 답변을 하였다.

라. ㉸㉸ 중학교장(이하 ‘피청구인’ 이라고 한다)은 2017. 11. 17. 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청구인의 선도기준에 따라 출석정지 5일의 징계조치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 이라고 한다)를 하였다.

2. 청구인의 주장

가.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위법이 있다.

나.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한 조치이다.

3. 피청구인의 주장

가. 청구인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1) 피청구인은 2017. 11. 13.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신고를

받고 담당교사인 ㉸㉸㉸ 교사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였고, 2017. 11. 14. 청구인에게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)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점, 동급 여학생이 반 남학생들로 인한 수업방해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힘들다며 조사를 의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.

2)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담당교사인 ㉸㉸㉸ 교사는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청구인의 행위가 이전에도 계속 되어왔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. 11. 7.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
4) 위 선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보호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며, 참여한 위원들의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결정함에 이 사건의 처분은 교칙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.

나.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1) 청구인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, 담당 교사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를 재차 제지하자 비로소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를 멈추었다.

2)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성적인 행위(혹은 그를 묘사하는 행위)이다.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과 담당교사

등 다수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.

3) 청구인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이전 교실에서도 여러 번 하였으며, 또한 이전에도 다른 사안으로 선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한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4)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.

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여부

가. 관계법령

- 『초·중등 교육법』 제18조
-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31조
- 『○○중학교 학생선도규정』

나. 판 단

1) 인정되는 기초 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,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청구인은 4교시 스포츠클럽 시간에 2017. 11. 13. 다른 동급생 ○●●가 4층 후관 소강당에서 떨어져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. 담당교사인 ■■■■ 교사는 청구인의 위 행위를 목격하

고 청구인에게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한 채 “예”라고 대답을 할 뿐 몸을 밀착한 상태로 유지하였다. 이에 담당교사 ㉸㉸㉸ 교사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를 재차 제지하고 나서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를 멈추었다. 담당교사인 ㉸㉸㉸ 교사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한 이유를 묻자 청구인은 “청소년인데 어떡냐, ○○○ 학생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랬다”라고 답변을 하였다. 그 후 피청구인은 2017. 11. 17.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청구인의 선도 기준 2항(교사에 폭언 또는 지도에 불응한 학생), 13항(수업태도불량, 학습권 침해), 38항(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)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결정을 하였다.

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

가)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점, 동급 여학생이 반 남학생들로 인한 수업방해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힘들다며 조사를 의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. 오히려 피청구인은 2017. 11. 13.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담당교사인 ㉸㉸㉸ 교사에게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였고, 2017. 11. 14. 청구인에게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, 선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보호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며, 참여한 위원들의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결정한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

주장은 이유가 없다.

나)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만 청구인이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청구인은 공공장소에서 성행위 묘사 행위를 한 점, 해당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재차 제지를 받고서야 행위를 멈춘 점,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여학생들과 여교사인 담당교사에 성적 수치심을 준 점, 위와 같은 유사 행위를 여러 번 하였던 점, 다른 사안으로 받은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.

5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